

양산물금2 H-1BL 행복주택(17형) 예비입주자 모집

[동호지정 · 선계약후검증 · 입주자격완화]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7.1.]

■ 금회 모집은 공가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신청자가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을 하고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적격자에 **한정하여 입주**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중전 선정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6.7.1.(목)이며, 입주자격심사(판단)의 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7.1.)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본 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계약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선착순 동호지정으로 신청접수장소(LH 양산권주거복지지사)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순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당일 도착 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단, 신청당일 오전 10시 정각까지 접수 장소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일 순번으로 간주하고, 전산추첨을 실시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 동호지정후 계약금 계좌이체(당일 가상계좌 부여), 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하며, 당일 4시까지 계약금 미입금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 됩니다.
- 접수기간중 모집호수 도달(계약금 완납기준)시 조기 마감될수 있습니다.
- 모든 신청자는 선착순 동호 지정일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시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최종 확정된 경우 동 계약은 우리 공사가 직권으로 해제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계약금은 반환됩니다. (계약금에 대한 이자 역시 LH가 부담하지 않음)
 - ※ 단, **입주자격 부적격 외의 사유(계약자의 변심에 의한 임의해약 등)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징수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 입금후 계약서 미작성시도 계약체결로 간주되어 계약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 부과**
 - * 위약금은 행복주택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위약금 : 월간 총임대료(주택임대차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제9조제1항에 따름)×24개월×5/100
- 계약금(50만원)은 동호지정 당일에 안내하는 가상계좌로 입금바라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자격을 검증(자격검증 및 소명 소요기간(1개월))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 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료 한시적 면제 및 샘플하우스 열람 등 주요사항 ★★

- 17m² 주택형은 (~'27.8.31) 한시적 임대료 면제를 시행중이며, **본 공고의 입주자도 동일하게 '27.8.31까지 기본 임대조건의 월 임대료를 면제**합니다.
- 17m² 주택형은 샘플하우스를 운영중이며 **주택 임대차계약 완료 후 세대 리모델링 실시하여** 입주예정입니다.
- **샘플하우스 열람장소** : 양산물금 천년나무 105동 (705호, 707호, 708호)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42>
 - ※ 세대 리모델링은 임대차계약후 707호 또는 708호 형태로 시행 됩니다.(705호는 **쇼룸으로 비치 물품 등은 입주시 미제공**)
- **샘플하우스 열람일시** : 2026.7.3.(금) ~ 2026.8.12.(수) ※ **평일 오후 10:00 ~ 16:00(주말(토,일), 공휴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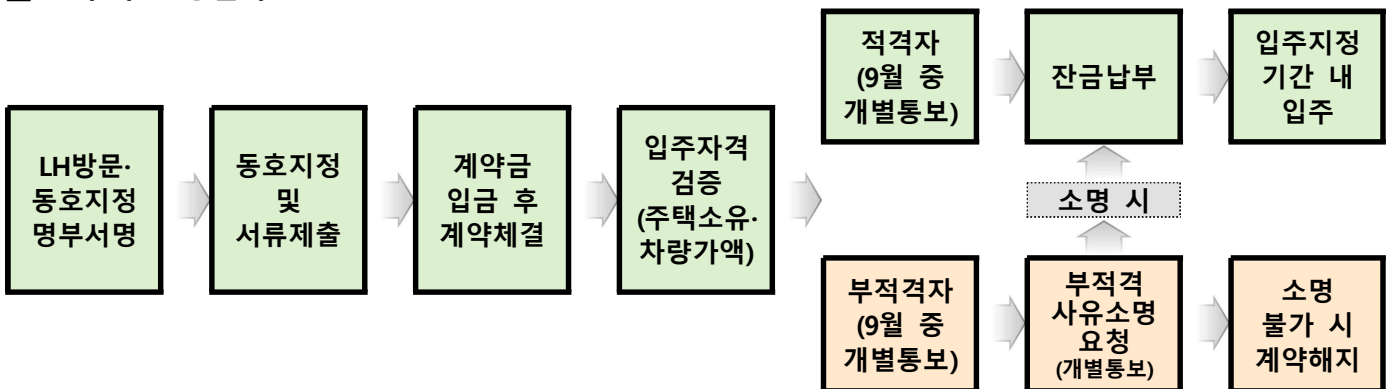
★★ 입주자격 완화 모집공고 주요사항(요약)★★

구분	완 화 내 용
소득 요건	소득요건 배제 * 단, 청년계층 임대조건은 소득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소득조회 시행
자산 요건	자산요건 배제 (단,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 일 것) * 대학생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무주택 요건	- 양산시 및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가능 - 양산시 및 연접지역에 주택이 있을 경우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
기간 요건	청년계층(사회초년생) 소득업무 종사기간 총 7년 이내

- (소형·저가주택)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7의3)
* 수도권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자격검증 범위에 속하는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정구, 북구

입주자 선정절차 및 동호지정 결정방법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지정기간 : 2026.9.14.(월) ~ 2026.10.14.(수)**

■ 접수(서류제출, 동호지정, 계약금 납부, 계약서 작성)

- 접수기간 : 2026.7.13.(월) ~ 2026.8.12.(수), (**★금요일, 주말, 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 오전 10시 ~ 오후 4시(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양산권주거복지지사(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 2026.7.13.(월) : 국민연금공단 6층 대회의실 / 2026.7.14.(화) ~ 2026.8.12.(수) : 국민연금공단 2층 마이홈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 동호지정후 가상계좌 일괄 부여(50만원 가상계좌 납부), 계약금 납부후 계약체결

※ **서류제출, 동호지정, 확약서 작성, 계약금 입금, 계약서 작성을 당일 모두 완료하여야 당일 절차가 끝나는 것이며, 동호지정후 부여하는 가상계좌로 계약금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 한 번 선택한 동호 절대 변경 불가

당일 10시 이전 도착자	당일 10시 이후 도착자
동일 순위로 간주하며, 전산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 결정하여 순번대로 동호지정 시작	10시 이전 도착자 동호지정 종료 후 방문 순서대로(접수대장 작성) 동호지정 시작

- 동호지정 당일 오전 10시 정각까지 접수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 도착자와 오전 9시 도착자를 동일 순위로 간주하여 추첨으로 순서를 결정합니다.

★★ 10시 전까지 오신 분은 모두 동일한 순번으로 너무 일찍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

- 업무진행자가 순서를 배정받은 자를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을 경우 제일 뒷 순번으로 순연하고, 선택이 완료된 동호는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10시 이후 도착자의 경우 10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 및 서류제출이 모두 끝난 후 진행되므로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7.1.(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동차 등)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6.7.1.)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무주택·자동차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1986.7.2. ~ 2007.7.1)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선착순 동호지정 모집으로 현장접수(양산권주거복지지사)만 가능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계약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양산물금2 H-1BL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42(양산물금2 LH 천년나무)	5개동 900호	'18.6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양산물금2 H-1BL

모 집 형 별 (㎡)	모 집 대 상		건 설 호 수	금 회 모 집 수	임대조건			세대 당 계약면적(㎡)					최 대 거 주 기 간	구 조 및 난 방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 대 료 (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계약금	잔금				기타 공용	주차장			
17	대학생		404	70	10,200	500 (정액)	9,700	51,510	17.23	10.4522	1.5687	8.2448	37.4957	10년	벽식 / 지역 난방
	청년	소득 無			10,200		9,700	51,510							
		소득 有			10,800		10,300	54,540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갱신계약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7㎡ 형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 **한시적 임대료 면제 시행으로 인해 본 공고의 예비입주자는 임대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임대보증금 감액 및 증액 불가)**

■ 예비입주자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신청자격 요약

계층	무주택	소득(배제)	총자산(배제)	자동차
대학생	무주택자 ^{주1)}	-	-	신청자 본인이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무주택자	-	-	세대 ^{주2)} 내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상기 표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p 4 ~ p 6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자(세대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주2)청년계층의 해당세대 : 세대주 여부에 따라 세대산정의 범위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p6 참고

3-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6.7.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㉓와 ②~

④)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㉔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소득요건 배제**
- ④ **총자산 요건은 배제하나**, 신청자 본인이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3-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6.7.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㉓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㉔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청년)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6.7.2. ~ 2007.7.1.)
- ①-㉔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소득요건 배제**
- ④ **총 자산요건을 배제하나,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을 적용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①-㉔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

- 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해당세대 범위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주민 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4.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위임장(공사양식)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부수
확약서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확약서 선계약 후검증 계약자 확약서	각1통 (공사양식)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전원(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발급) ※상세로 발급	1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 한하여 작성(소득기준 배제) *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세대에 한하여 작성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1통 (공사양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 신청자 전원	1통 (공사양식)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 생 계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청년 청년 계층	공통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사본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은행 등
	청년 (19세이상~ 39세이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소득 없음으로 신청한 청년도 반드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5.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입주자격 검증

- 본 공고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및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한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차 금액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단, 청년계층의 소득 無 계층은 임대조건 산정을 위한 소득금액 조회)

- 무주택 및 자동차가액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직권해제(해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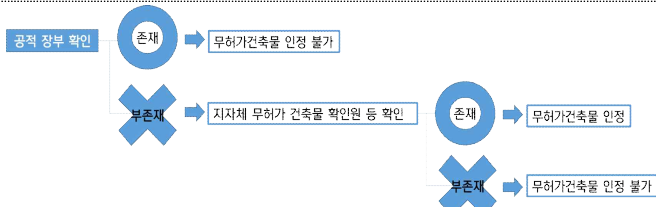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참고) 무허가건물 확인 절차



* 소명방법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등입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임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공적이전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

	소득	소득	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6.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자격 완화	■ 입주자격 완화 사항 <table border="1"> <tr> <td>■ 소득요건</td><td>배제</td></tr> <tr> <td>■ 자산요건</td><td>배제 (단,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 일 것)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td></tr> <tr> <td>■ 무주택요건</td><td>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입주 허용하며 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있더라도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입주 허용</td></tr> <tr> <td>■ 기간요건</td><td>사회초년생 계층 : 소득 업무 종사 기간 7년 이내</td></tr> </table>	■ 소득요건	배제	■ 자산요건	배제 (단,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 일 것)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요건	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입주 허용하며 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있더라도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입주 허용	■ 기간요건	사회초년생 계층 : 소득 업무 종사 기간 7년 이내
■ 소득요건	배제								
■ 자산요건	배제 (단,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 일 것)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요건	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입주 허용하며 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있더라도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입주 허용								
■ 기간요건	사회초년생 계층 : 소득 업무 종사 기간 7년 이내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금회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동일 완화자격으로 한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완화요건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은 1회만 가능하며,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거주중 소득기준(소득기준을 완화한 경우 완화하기 전 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말함)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								

	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table>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 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만일 통보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7.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양산물금2 H-1BL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동아건설(주) 강산건설(주) (주)우노건설	-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접수처 약도	
도로명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양산회관 2층 LH 양산권주거복지지사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7.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동 확약서의 내용은 '26. . .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계약조건”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서, 확약자는 해당내용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본래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한 공고**에 따른 입주자로서 재계약시 아래와 같은 특수 조건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에 따른 재계약 거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0. (공통) 재계약을 위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제부금 완납 및 해당 주택을 명도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1. (소득·총자산배제) 소득·총자산 요건을 미 충족 시에도 관계법령 등에 따라 재계약이 허용 가능하며, 임대조건 할증여부는 재계약 시점에 변동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재계약은 1회만 가능하며, 예비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추가 재계약 허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 (주택완화) 입주자모집공고 전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이 1회만 가능하며, 이후에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확약자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계 약 동 호 : (물 금 천년나무) 임대주택 ()동 ()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

화 약 서

본인은 (물금 천년나무) 임대주택 ()동 ()호 계약자로서
 동 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격을 검증함"에 따른 것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1. 향후 입주자격에 흠결이 있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사')가 동 계약을 직권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제(해지) 시 LH는 위약금 및 계약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입주자격 흠결이 아닌 계약자의 입주자격 검증관련 보완서류 미제출, 계약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임의 해약 등의 경우에는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위약금을 LH공사가 징수함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LH 공사로부터 최종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계약주택에 대한 이사 일정 등 입주계획을 세울 것이며,

입주가능 여부를 최종 통보받기 전 임의로 이사일정 등을 세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정차질,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해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확약자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아래 사항을 읽어보신 후 해당사항에 ☒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전입일, 주소 등)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다. 수집 및 이용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득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 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지급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납입이정회수, 저축금액 등),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민감정보 제공동의 안내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동의거부 시 계약거절 안내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 안내를 받았습니다.

6. [선택]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안내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위 1~6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 이해하였습니다.

2026. .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확인 내용

신청인 본인은 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이하 동일)의 입주자 모집에 청약신청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동일한 공급유형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의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 처리됨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처리 순서기준】

-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 중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

2.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 모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됨

【입주여부 판단기준】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을 입주일로 판단

신청인 : (인)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1조(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각각을 말한다)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대기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제3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제외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각 서

(복학예정자의 복학 및 복학증명서류 제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대 학 명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현재 휴학 중이나 다음 학기(20 년 월) 복학예정자로서 _____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학기까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각서인 : (인)